

의안번호	2218330
의 퇴 인	전현희 의원
회 답 일	2026.06.24.
추계번호	26C1799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 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서류 심사 및 면접 시험 등 공무원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에 따라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임용자의 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의무규정
2	안 제6조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제1항)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은 승진 및 호봉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의무규정
3	안 제7조 (재직기간의 산입에 관한 특례)	(제1항) 제6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안 제6조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안 제7조 (재직기간의 산입에 관한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과거 채용되어 호봉제가 적용되는 국공립 중·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학교회계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시·도교육청 조례는 이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지칭하고 있음
 - － 교육공무직원에는 사무행정 외에 조리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며,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교육공무직원은 약 17만명임
 - 학교회계직원은 육성회직원 및 학부모회직원을 전신으로 하며, 정부는 초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과정에서 초등학교 소속 육성회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바 있음
 - － 무상교육 실시 이전 각급학교는 육성회(’70~’97년) 및 학부모회(’98~’99년) 등을 운영하여 행정직원 등을 고용하고,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였음
 - － 그러나 1997년 초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육성회비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교 소속 육성회직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이들은 2013년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
 - 이와 달리 중·고등학교 소속 구 육성회직원들은 무상교육 시행 시기가 상이하여 공무원 전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¹⁾, 현재 공무직 근로자 신분으로 호봉 상한이 존재하는 등 임금체계상 제약을 받고 있음
 - － 해당 인원들은 육성회 및 학부모회 시기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였던 종전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호봉제가 적용되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07년 이후 호봉제 직원의 신규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²⁾
 - － 참고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호봉제가 적용되는 학교회계직원은 2,465명임
- * [참고자료] 채용시기별 호봉제 적용 학교회계직원 현황

1)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는 중학교(’12년) 및 고등학교(’21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지되었음

2) 교육부는 학교회계 도입(’00) 이후 학교회계직원 수요 증가로 2006년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을 통해 연봉제 계약 체결을 권장하였으며, 연봉제 임금체계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따라 현재는 월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이에 제정안은 중·고등학교에 소속된 구 육성회직원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등학교 소속 구 육성회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전환되지 않고 학교회계직원으로서 장기 근무 중인 구 육성회직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시행 시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별 근속연수 등 기초 통계가 부족하고 시·도별 현행 임금체계가 상이하여 현시점에서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
 - 제정안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호봉 상승 및 각종 수당 등의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대상자의 근속연수 및 적용 호봉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연도별 봉급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움
 - 제정안은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 및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 경력이 봉급 산정에 전면 반영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다수의 인원이 최고 호봉인 31호봉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현시점에서 대상자의 근속연수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상한 도달 시점 및 연도별 인건비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 또한,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회계직원의 호봉 상한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인건비 규모를 산출하기 곤란함
 - 이외에 연금 기여금 및 기관부담금 등 공무원 전환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 변동분이 추가재정소요에 포함되나, 위와 같이 대상자의 기준소득월액 추정이 어려우므로 이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채용시기별 호봉제 적용 학교회계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구 육성회 직원('70~'97년)	(구) 학부모회 직원('98~'99년)	학교회계 직원('00년~)
서울	179	40	316
부산	67	19	56
대구	39	18	64
인천	43	11	74
광주	32	12	79
대전	47	13	76
울산	0	0	0
세종	4	0	2
경기	84	42	367
강원	15	4	8
충북	23	5	27
충남	72	20	103
전북	26	6	26
전남	54	8	103
경북	29	9	79
경남	35	9	63
제주	9	2	14
국립	15	2	15
소계	773	220	1,472
합계	2,465		

주: 국립의 경우 2025년, 공립의 경우 2026년 기준 자료임
 자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